

제증명 안내문

의료법 제 2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절차가 필요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
***법규 위반시 -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의료법 제88조(벌칙)>**

<제증명 발급시>

***본인이 직접내원시-신분증 확인**

***직계가족분이 내원시**

1. 가족관계증명서류 지참.
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2. 내원하시는분 신분증
3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*** 모두 지참하셔야 발급가능**

***대리인이 내원시**
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2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3. 내원하시는분 신분증
4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*** 모두 지참하셔야 발급가능**

※ 위임장, 동의서는 나은병원 홈페이지(www.luga.co.kr)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